

● 2026 수험생 부담완화 프로젝트

매월 필요한 강의, 5만원 더 가볍게 준비하세요.

변리사 시험은 한 번의 수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강의부터 객관식, 최종정리, 모의고사까지 이어지는 수험 여정에 변리사스쿨이 매월 학습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규회원 가능

기존회원 가능

매월 1회 지급

12월까지 운영

MONTHLY STUDY SUPPORT

50,000원

매월 지급되는
월간 학습지원금 쿠폰

2026.06.01 ~ 2026.12.31

매월 5만원

매월 1일 학습지원금 쿠폰을
제공합니다.

회원 전원

신규회원과 기존회원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강의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당월 사용

지급받은 쿠폰은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1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타법개정]

1회차 복습

- 표장(mark)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의 상품의 출처표시
- 표장(mark) 유형 - 상표(Trade mark, 자연인 또는 법인, 예: samsung), 단체표장(Collective mark, only 법인, 예: 새마을금고),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자연인 또는 법인, 예: 세계일류상품), 업무표장(Business mark, 자연인 또는 법인, 예: YMCA)
- 상표(Trade mark) - 자기의 상품(서비스 포함)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 mark) -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 절차총칙 - 본인능력(제4조, 제5조, 제6조), 대리인능력 등(제7조 내지 제15조), 기간 계산·연장 등·추후보완·정지(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서류 작성·제출·송달(제28조 내지 제32조), 수수료(제78조), 반려·무효 방식심사(시규 제25조, 제18조), 권리 이전시 절차의 효력승계·속행(제20조, 제21조), 취하·포기

제1조(목적)¹⁾ 이 법은 _____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_____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_____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 업무상 신용 유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제89조(상표권의 효력)²⁾ 상표권자는 _____에 관하여 그 _____를 _____할 권리를 _____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상품, 등록상표, 사용, 독점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³⁾ ① _____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1) 특허법 제1조(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 → 산업발전 이바지 vs 상표를 보호 → 산업발전 이바지 & 수요자 이익 보호
 2)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특허발명 실시 독점 vs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사용 독점
 3)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vs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지정상품

② _____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지정상품의 보호범위

제2조(정의)4)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_____하기 위하여 _____하는 _____(標章)을 말한다.

식별, 사용, 표장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_____(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출처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 발명이란 자기창고 vs 상표란 자타상품식별 위한 표장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표시)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유통)
 -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유통)
 - 라.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광고)
-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포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⁵⁾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_____으
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_____에 의하여 _____씩 _____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
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
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0년, 갱신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⁶⁾ ① 상표권은 _____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_____ (일

5)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a vs 등록일부터 10년+10년 단위로 갱신 可

6)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특허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vs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_____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_____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 30일

제68조(상표등록결정)⁷⁾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_____(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_____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⁹⁾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

7)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 출원 → 심사청구 → 특허결정 → 특허료 납부 vs 출원 → 출원공고결정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8)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특허법에는 이의신청절차 無
 9)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주소 + 명[도]요 vs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
4. _____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 (이하 “_____”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상품류

-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수수료)¹⁰⁾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¹¹⁾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 (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¹²⁾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_____ 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¹³⁾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_____”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10) 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83조 제1항(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1)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특허취소신청 vs 이의신청
 12)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심사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vs 이의신청인
 13)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특허관리인 vs 상표관리인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상표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¹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보불심) 또는 제116조(거불심)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출x상신청x불복

제8조(대리권의 증명)¹⁵⁾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4)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 출존특신청우불복 vs 출x상신청x불복

15) 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¹⁶⁾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¹⁷⁾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¹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¹⁹⁾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16)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7)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18) 특허법 제9조(개별대리)

19) 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vs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_____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청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²⁰⁾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다.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보불심) 또는 제116조(거불심)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0)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²¹⁾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²²⁾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²³⁾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²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1) 특허법 제12조(「민소소송법」의 준용)

22) 특허법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23) 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24)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거불심 청구기간 vs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 보불심 청구기간, 거불심 청구기간 : 특허법에는 이의신청절차, 보불심절차 無

1. 제61조에 따른 _____

2. 제115조에 따른 _____

3. 제116조에 따른 _____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18조(절차의 무효)²⁵⁾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²⁶⁾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5)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26) 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거불심, 재심 vs 보불심, 거불심, 재심

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_____
2. 제116조에 따른 _____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_____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심의 청구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²⁷⁾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²⁸⁾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²⁹⁾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27) 특허법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28) 특허법 제19조(절차의 속행)
 29) 특허법 제20조(절차의 중단)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³⁰⁾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³¹⁾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_____ 및 _____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_____ 또는 _____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

30) 특허법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31) 특허법 제22조(수계신청) :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명령 요청(상대방) vs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신청(상대방)

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상대방,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상대방

- 제25조(절차의 중지)³²⁾**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³³⁾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³⁴⁾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32) 특허법 제23조(절차의 중지)

33) 특허법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34) 특허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등록신청서류, PCT 국제출원서류 vs 등록신청서류,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류(제170조)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_____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_____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편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³⁵⁾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35)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³⁶⁾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³⁷⁾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36)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37) 특허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³⁸⁾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절차의 보정)³⁹⁾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8) 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39)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⁴⁰⁾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40)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2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타법개정]

2회차 복습

- 27 - 재외자+외국인+비동맹국
- 3①本 - 사용의사
- 3①但 - 직원
- 33 - 그 상품의 보통명칭
 - 그 상품의 관용명칭
 - 그 상품의 성질(산품원호/용수형/가생가사시)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현저한 지리적명칭·약어·지도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혼한 성·명칭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간단 and 혼한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 그 외 식별不可 - 출원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¹⁾ _____인 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재외자, 외국인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²⁾ ① 국내에서 상표를 _____ 또는 _____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_____과 _____은

1) 특허법 제25조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_____. _____ . _____ . _____ 또는 _____ 를
_____ 으로 표시한 표장 _____ 된 상표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만으로

4. _____ 이나 그 _____ 또는 _____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만으로

5. _____ 또는 _____ 을 _____ 으로
표시한 표장 _____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명칭,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만으로

6. _____ 하고 _____ 있는 표장 _____ 된 상표

간단, 흔히, 만으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_____ 상표

식별할 수 없는

② 제1항 _____ 까지 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_____ 부터 그 상표를
_____ 한 결과 수요자 간에 _____ 를 표시하는 것으로 _____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_____ 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호부터 제7호, 출원 전, 사용,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식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3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다법개정]

3회차 복습

- 34 - 국가·국장 등과 동일·유사 **기관·기구의 경우 자기 명칭은 可**
 -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비방
 - 국가·공공단체 등의 비영리업무를 나타내는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 **자기 표장은 可**
 - 공서양속 위반
 - 박람회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 **수상자는 상표 일부로 可**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포함 **타인 승낙 받은 경우는 可**
 - 선출원 등록상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와 동일·유사 **7호 타인 동의 받은 경우는 可(상표공존동의제)**
 - 주지상표(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저명상표 혼동·희석화 염려
 - 품질오인·수요자 기만(국내 특출인 상표와 동일·유사)
 - 국내외 특출인상표(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부정한 목적
 -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 포도주,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 포함 **지리적표시 정당한 사용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可**
 - 식물신품종보호법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자유무역협정 보호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
 - 신의칙 위반
 - 조약당사국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거래관계 **권리자 동의 받은 경우는 可**
 - **11, 13, 14, 20, 21호 + 3항 출원시 기준**
- 34③ - 4호 빼고 취소사유로 취소심판 청구되고 청구일 이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3년 내 동일·유사 출원
- 35 -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타인 동의 받은 경우는 可(상표공존동의제)**
 - 동일자 출원 추천제 **타인 동의 받은 경우는 可(상표공존동의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_____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이나 _____의 _____용 또는 _____용 _____.
_____와 _____한 상표

대한민국,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 공공기관, 감독, 증명, 인장, 기호, 동일유사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_____”이라 한다) _____,
_____ 또는 「_____」 _____(이
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_____와 _____한 상
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제약국, 국기, 동일유사

다. _____, _____ 또는 _____의
_____, _____, _____과 _____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약칭, 포장, 동일유사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_____이 지정한 _____등
의 _____,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_____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과 _____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청장, 동맹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 정부 간 국제기구,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 동일유사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_____이 지정한 _____등
이나 그 _____의 _____용 또는 _____용 _____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_____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지식재산처장, 동맹국, 공공기관, 감독, 증명, 인장, 기호, 동일유사, 동일유사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_____하
거나 이들을 _____ 또는 _____하거나 이들에 대한 _____가
있는 상표

거짓으로 표시, 비방, 모욕,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_____나 _____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_____과 _____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업무, 공익사업, 저명한 것, 동일유사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
덕관념인 _____에 어긋나는 등 _____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
표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5. _____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_____을 받아 개최하는 _____ 또는
_____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_____을 받아 개최하는 _____의
_____·_____ 또는 _____과 _____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승인, 박람회, 외국정부, 승인, 박람회, 상패, 상장, 포장, 동일유사

6. _____의 _____·_____ 또는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또는 이들의 _____을
_____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저명한 타인,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약칭, 포함

7. _____에 의한 _____의 _____(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공존동의 제도).**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 동일유사, 동일유사

8. _____에 의한 _____의 _____과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_____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선출원, 타인,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동일유사, 동일

9. _____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_____되어 있는 상표(주지상표,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타인, 널리 인식, 동일유사, 동일유사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_____되어 있는 _____의 지리적 표시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_____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널리 인식, 타인, 동일유사, 동일

11. 수요자들에게 _____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저명상표)과 _____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_____ 또는 _____을 _____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현저하게 인식, 혼동, 식별력, 명성, 손상

12.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를 _____할 염
 려가 있는 상표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13. _____ 또는 _____의 수요자들에게 _____하는 것이라
 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_____한 상표로서 _____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_____를 입히려고 하는 등 _____으로 사
 용하는 상표

국내, 외국,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동일유사, 부당한 이익, 손해, 부정한 목적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_____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_____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
 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 동일유사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_____ 또는 그 _____의 _____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으로 된 상표

상품, 상품의 포장, 기능,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냄새만

16. _____ 내의 _____ 또는 _____의
 _____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_____ 또
 는 _____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
 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포도주, 증류주, 산지, 포도주, 증류주

17. 「_____」 제109조에 따라 _____과
 _____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_____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

하는 상표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록된 품종명칭, 동일유사, 동일유사

18. 「_____」 제32조에 따라 _____ 된 _____의
 _____와 _____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_____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록, 타인, 지리적 표시, 동일유사, 동일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_____에
 따라 보호하는 _____의 _____와 _____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_____하
 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자유무역협정, 타인, 지리적 표시, 동일유사, 동일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_____이 _____하
 거나 _____ 중인 상표임을 _____ 그 상표와 _____한
 상표를 _____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타인, 사용, 사용을 준비, 알면서, 동일유사, 동일유사

21. _____에 _____ 된 상표와 _____한 상표로
 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_____나 업무상
 _____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조약당사국, 등록, 동일유사, 계약관계, 거래관계, 동의, 동일유사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

으로 하여 결정하되,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청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요 심사기준 정리]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비교》

적용조문	대 상	요 건
법§34①2	저명한 고인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34①4	저명한 고인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법§34①6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그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구분	주지상표	저명상표
입법취지	사용사실상태의 보호	출처혼동방지 또는 희석화 방지
인식도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관련 수요자층	이종상품·이종영업에까지 걸친 일반 수요자층
범위	상품의 동일·유사범위 내	이종상품·이종영업까지 확대
제척기간	5년	없음

《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비교》

구분	법§34①9	법§34①11	법§34①12	법§34①13
취지	출처 오인·혼동 방지, 주지상표권자 이익보호	저명상품·영업과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 보호, 저명상표 희석화 방지	상품의 품질오인, 출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방지(다만, 출처의 오인·혼동은 법§34①9,11,13 등을 요건에 맞게 우선 적용하고, 본호는 수요자 기만에 초점을 맞춰 적용)	진정한 상표사용자 신용보호, 브로커 방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주지도	동종업종에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이종상품이나 영업에 걸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 대다수에게 현저하게 인식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
상표	동일·유사	비유사하여도 모티브나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저명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는 경우	동일·유사	동일·유사
상품	동일·유사	비유사	비유사(다만, 수요자 기만 발생과 관련하여 견련관계 고려)	비유사(다만, 부정목적 추정을 위해서는 견련성 검토 필요)
인식도 판단방법	상표 사용기간, 사용 방법, 사용지역, 거래 범위, 상품 판매량, 광고선전 등을 종합 고려	좌동	좌동	좌동(다만, 특정인의 상표라는 인식+부당한 기대이익 유무를 통해 인식도 판단 가능)
시기적 기준	상표등록여부 결정을 할 때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상표등록여부 결정을 할 때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제척기간	5년	없음	없음	없음

《법 제34조제1항제20호와 제4호 비교》

법 §34①20	법 §34①4
당사자간 신의칙 위반이 있는 경우 적용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출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신의칙 위반이 있는 경우 적용	단순한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이 어렵고,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법 제34조제1항제20호와 제13호 비교》

법 §34①20	법§34①13
모방대상상표의 인식도가 필요 없음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함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관계 필요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관계 불요
타인의 사용, 사용 준비중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적용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
동일·유사한 상품에 적용	상품 제한 없음(다만, 부정목적 유무 판단을 위해 견련성 검토 필요)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4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다법개정]

4회차 복습

- 38① - 동일인 동일상표·동일상품 중복출원, 20이상 상표 1출원,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 출원보완명령 - 취성상상한
- 부분거절제도, 절차계속신청제도
- 우선심사신청 - 출원 후 제3자 사용, 조출/경고,이의,경고/기초,조달사업,존속만료

구분	상표건본	상표설명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시행규칙 제28조				
일반상표(전형상표)	상표건본	임의	-	
입체상표	도면 또는 사진	임의	-	
색채만으로 된 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홀로그램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동작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전자적 기록매체
소리상표	-	필수	필수	소리파일
냄새상표	-	필수	필수	냄새건본
위치상표 (기타 시각적 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_____ (저명상표)·

_____ (국내외 특출인+부정한 목적)· _____ (국내외 특출인+부정한 목적+지리적 표시)·

_____ (신의칙 위반) 및 _____ (조약당사국 등록상표+거래관계)의 경우는 상표등록

_____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제1

항의 _____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 _____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다.

1. 제54조에 따른 _____

2. 제68조에 따른 _____

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 출원을 한 때, 타인, 결정을 할 때,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_____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_____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_____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_____한 경우
3. 상표등록 _____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일유사, 동일유사, 청구일, 3년, 존속기간이 만료, 포기, 취소의 심결이 확정

제35조(선출원)¹⁾ ① _____한 상품에 사용할 _____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_____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동일유사, 먼저 출원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_____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_____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_____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협의, 추천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특허법 제36조

1. _____ 또는 _____ 된 경우
2. _____ 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 또는 _____ 이
_____ 된 경우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확정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_____ 를 받은 경우(_____ 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_____ 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_____ 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공존동의 제도).

동의, 동일, 동일, 제외

제38조(1상표 1출원)2)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_____ 의 상품을 지정하여 _____ 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1류 이상, 1상표

2) 특허법 제45조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³⁾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⁴⁾.

1. _____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_____에 위반된 경우
3. _____, _____, _____부터 _____까지, _____,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상품 일부, 그 지정상품, 제2조제1항, 조약, 제3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제1항

제36조(상표등록출원)⁵⁾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특허법 제62조

4) 상표법 부분거절제도 vs 특허법 출원일체원칙

5) 특허법 제42조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

4. _____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 (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⁶⁾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6)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_____(영 제2조제3호(소리·냄새)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_____(영 제2조제2호(색채, 홀로그램, 동작)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소리·냄새)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영 제2조제3호(소리·냄새)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_____(해당 표장을 문자·숫자·기호·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_____(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_____(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 나.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 패치”라 한다) 30장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_____(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견본, 설명서, 시각적 표현, 소리파일, 냄새견본, 동작, 전자적 기록매체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5조의 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상품 설명서

가. 지정상품의 명칭

나. 지정상품의 특성 및 거래실정

다.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라. 그 밖에 지정상품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4. 건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

- 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상표법 시행령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_____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_____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_____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_____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_____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_____할 것을 명_____.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_____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_____할 수 있다.

취지, 성명, 상표, 지정상품, 한글, 보완, 하여야 한다, 보완서, 반려

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

7) 특허법 제42조의2

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_____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완기간, 서류반려요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⁸⁾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3.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_____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_____하지 아니한 경우
- 6의2. 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나.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다.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8.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 _____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1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15.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 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 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17.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완명령, 보완, 시각적 표현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2. 반려이유
3. 소명기간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상표건본	설명란 기재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일반상표	상표건본 1개	임의	불필요	
입체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입체사진	임의	불필요	사용증거(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단일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채색된 1장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사용증거
홀로그램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동영상자료(임의)
동작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전자적 기록매체(필수)

구 분	상표건본	설명란 기재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소리상표	불필요	필수	필수	사용증거(식별력 없는 소리인 경우) 소리파일, 악보(임의)
냄새상표	불필요	필수	필수	사용증거 냄새건본
기타 시각적 상표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필수	불필요	사용증거 동영상자료(임의)
기타 비시각적 상표	불필요	필수	필수	사용증거 기타 자료(임의)

일반상표(전형상표) : 기호, 문자, 도형 /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특수상표(비전형상표) : 입체, 색채만, 홀로그램, 동작, 위치(기타 시각적 상표), 소리, 냄새

cf) 절차무효사유

제39조(절차의 보정)⁹⁾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18조(절차의 무효)¹⁰⁾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9) 특허법 제46조 : 3①, 6, 방식, 수수료

10) 특허법 제16조

cf) 특허법 쪽지시험 10회차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¹¹⁾.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¹²⁾.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¹³⁾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¹⁴⁾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11)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12) 특허법 제61조
 13)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14) 특허법 시행령 제9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삭제

상표법 시행령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¹⁵⁾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¹⁶⁾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¹⁷⁾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15) 특허법 시행령 제10조

16) 특허법 제57조

17) 특허법 제58조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¹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¹⁹⁾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

18) 특허법 제58조의2

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49조(정보의 제공)²⁰⁾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서류의 제출 등)²¹⁾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²²⁾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

19) 특허법 제217조
 20) 특허법 제63조의2
 21) 특허법 제222조
 22) 특허법 제62조

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거절이유통지)²³⁾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

23) 특허법 제63조

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²⁴⁾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

24) 특허법 제66조

야 한다.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²⁵⁾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²⁶⁾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5) 특허법 제67조

26) 특허법 제78조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5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타법개정]

5회차 복습

- 심사순위 - 출원순위, 우선심사신청
- 1인 심사관 심사한계 협력제도 - 전문기관, 정보제공/이의신청
- 심사 - step 1) 심사대상확정, step 2) 기통지 거절이유 극복 여부, step 3) 다른 거절이유 존재 여부
 - 지정상품별 심사, 부분거절제도 有
- 보정절차 - (주) 출원인, (기) 출원공고결정 전 보정, 출원공고결정 후 보정 구분 (서) 보정서
 - 요지변경시 : 보정각하결정 / miss 후 설정등록시 취급

요지변경	출원공고결정 전 보정	출원공고결정 후 보정
보정각하결정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 확정시까지 출원에 대한 심사보류(거통, 거절, 출원공고결정 보류)	심사관은 심사보류 없이 심사진행
	출원인은 보정각하결정 불복 可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함께 불복 可
miss 후 설정등록	보정서 접수일 = 출원일 거절 전, 출원공고결정 전	보정 무효
보정기간	거절 후 거불심 청구일부터 30일, 거불심 단계에서 거통 의견서제출기간, 재심사청구기간	거절 후 거불심 청구일부터 30일, 거통 의견서제출기간/거불심 단계에서 거통 의견서제출기간, 재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 답변서제출기간

(심사기준) 요지변경인 경우의 처리

- 다음의 경우 심사관(심판관)은 출원인이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출원공고결정이나 거절이유통지, 등록여부결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정각하결정불복에 관한 심판(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 (i) 출원공고결정 전이나 거절이유의 통지 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ii) 출원공고된 적이 없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iii) 출원공고된 적이 없이 거절결정된 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포함)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후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 의견서제출기간 이내에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심사관(심판관)은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심사(심판)을 중지함이 없이 계속한다.
 - (i) 출원공고된 후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ii) 출원공고된 후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iii) 출원공고된 후 거절결정된 출원(이의결정으로 거절된 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포함)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후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 변경출원 - (주) 원출원인, (기)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 (서) 출원서 취지, 원출원 표시
- 분할출원 - (주) 원출원인, (기) 제40조, 제41조 보정기간, (서) 출원서 취지, 원출원 표시
- 분할이전출원 - (주) 이전 받은 자(승계인), (기) 출원 계속 중, (서) 출원서 취지, 원출원 표시
- 조약 우선권주장 - (주) 동맹국 국민 또는 재내자 + 기초출원인 또는 우주승계인, (기) 6개월, (서) 출원서 취지, 국가명, 연월일 / 출원일로부터 3개월 증명서류, (기초출원) 최선성, 정규성
- 출원시 특례 - (주) 박람회 출품자, (기) 출품일로부터 6개월, (서) 출원서 취지, 출원일로부터 30일 증명서류

cf) 특허법 쪽지시험 10회차, 심사관님 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_____에 따른다¹⁾.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²⁾.

1. 상표등록출원 후 _____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_____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³⁾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⁵⁾

출원의 순위, 출원인이 아닌 자, 사용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⁶⁾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 _____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_____에 대하여 _____하

1)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심사청구의 순위
 2) 특허법 제61조
 3) 특허법 제61조 제1호
 4)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5) 특허법 제61조 제2호,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방록4만수국 벤중직지 국조국출 합
 6) 특허법 시행령 제9조

- 고 있거나 _____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 _____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받은 경우
- 2의2. 상표등록 _____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_____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 _____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_____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_____에 _____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_____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_____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_____한 경우
8. 삭제

출원인, 전부, 사용, 사용할 준비, 출원인, 서면 경고, 출원인, 이의, 출원인, 서면 경고, 국제등록부, 등록, 우선권 주장의 기초, 존속기간 만료, 동일

상표법 시행령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특허법 시행령 제10조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⁹⁾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¹⁰⁾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_____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¹¹⁾으로 정하는 _____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_____이나 상표에 관한 _____ 또는 _____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8) 특허법 제57조

9) 특허법 제58조

10) 상표법 시행령 제11조

11) 상표법 시행령 제11조의2

또는 _____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²⁾으로 정한다.

등록, 전담기관, 관계 행정기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¹³⁾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_____하여야 하며,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_____하거나 _____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_____를 명할 수 있다.

1. _____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_____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_____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_____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호, 취소, 제2호, 취소, 6개월 이내, 정지, 거짓, 등록, 등록기준, 청문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¹⁴⁾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_____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_____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_____의

12) 상표법 시행령 제10조

13) 특허법 제58조의2

14) 특허법 제217조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_____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

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_____을 하거나 질의에 _____할 수 없다.

상표검색, 조정, 전자화업무, 온라인 원격근무, 감정, 증언, 응답

제49조(정보의 제공)¹⁵⁾ _____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_____ 또는 _____에 게 제공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제56조(서류의 제출 등)¹⁶⁾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¹⁷⁾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부분거절제도).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

15) 특허법 제63조의2, 제170조 제1항
 16) 특허법 제222조
 17) 특허법 제62조, 출원일체원칙 vs 부분거절제도

-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상품 일부, 그 지정상품

제55조(거절이유통지)¹⁸⁾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_____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¹⁹⁾.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절차계속신청제

18) 특허법 제63조

19) 특허법 제63조 제2항, 청구항별 심사 vs 지정상품별 심사

도).

지정상품별, 2개월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_____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_____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_____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_____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_____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_____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확정, 출원공고, 분할, 취소의 심결, 출원공고, 30일

제68조(상표등록결정)²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_____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확정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²¹⁾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20) 특허법 제66조

21) 특허법 제67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22)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_____.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_____.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59조(직권보정 등)23)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_____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_____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_____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_____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_____된 것으로 본다.

⑤ 직권보정이 _____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_____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출원공고결정, 제40조제2항, 제57조제3항, 의견서, 처음부터, 취소, 제40조제2항, 명백히 잘못, 처음부터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24)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_____를 발견한 경우에는 _____으로 상표등록결정을 _____하고 그 상표등록

22) 특허법 제78조
23) 특허법 제66조의2
24) 특허법 제66조의3

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_____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 _____된 경우
 3. 그 상표등록출원이 _____되거나 _____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_____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_____ 또는 _____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백한 거절이유, 직권, 취소, 제38조제1항, 등록, 취하, 포기, 받기 전, 제2호, 제3호, 처음부터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²⁵⁾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_____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_____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_____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_____할 수 없다.

거절결정, 3개월, 재심사, 제116조, 취소, 무효, 취하

25) 특허법 제67조의2

절차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²⁶⁾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_____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_____,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_____ 및 _____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_____
-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_____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_____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_____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른 _____

요지, 기재사항, 지정상품, 상표, 재심사의 청구기간, 출원공고, 상표등록거절결정, 30일,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_____의 범위의 _____
2. _____의 정정 (잘못된 기재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_____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화)
4. _____의 _____인 _____의 _____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_____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_____이 있는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를 제출한 때에 _____을 한 것으로 본다.

26) 특허법 제47조

지정상품, 감축, 오기, 석명, 상표, 부기적, 부분, 삭제, 표장에 관한 설명, 설정등록, 보정서, 상표등록출원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_____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_____ 및 _____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_____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_____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_____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_____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_____이 있는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요지, 지정상품, 상표, 30일, 의견서 제출기간, 재심사의 청구기간, 답변서 제출기간, 설정등록, 보정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_____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_____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 _____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_____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_____ 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_____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_____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정을 각하, 심판청구기간, 결정, 결정, 확정, 중지, 제41조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_____ 또는 거절결정을 _____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보정각하결정, 취소

제44조(출원의 변경)²⁷⁾²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_____ 등록출원

27) 특허법 제53조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28) 특허: 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정당권리자출원

상표: 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변경출원(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제출원출원(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이전출원(상표, 업무표장)

2. _____ 등록출원(_____ 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_____ 등록출원(_____ 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_____ 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_____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_____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_____²⁹⁾ 또는 _____³⁰⁾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³¹⁾.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정상품추가, 상표, 최초, 제46조제3항·제4항, 제47조제2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_____ 또는 _____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_____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⑦ 제47조에 따른 _____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_____된 것으로 본다.

등록여부결정, 심결, 우선권 주장, 30일, 출원 시의 특례, 취하

제45조(출원의 분할)³²⁾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_____

29) 조약우선권주장 : 출원시 취지, 국가명, 연월일 표시 / 출원일부더 3개월 증명서류

30) 출원시 특례 : 출원시 취지 표시 / 출원일부더 30일 증명서류

31) 특허 : 확공조국

_____ 및 _____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제41조제1항 각 호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³³⁾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_____(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_____이 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_____상표등록출원서에 그 _____,

32) 특허법 제52조

33) 특허법 제54조

최초로 출원한 _____ 및 출원 _____ 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_____, _____ 및 _____ 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5조, 6개월, 출원 시, 국가명, 연월일,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지정상품, 3개월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 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_____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 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_____ 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개월, 출품을 한 때, 취지, 30일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_____ 이나 그 밖의 _____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 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_____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_____ 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상속, 일반승계, 출원인 변경신고, 지정상품마다, 유사한 지정상품, 등의

26년 6월 27일, 시작합니다.

보고, 보이고, 보완하는 모의고사

2026년 64회 1차 대비

변리사스쿨 THE PREMIUM 모의고사 연간 일정

단순한 점수확인을 넘어 현재 위치와 취약점을 확인하고
시험 직전까지 실전 감각을 완성하는 **연간 실전 점검 과정**입니다.

실전처럼 **보고**, 약점은 **보이고**,
다음공부는 **보완합니다**.

일정	진행과목	범위
2026년 6월 27~28일 (토,일)	산업재산권법(특허법 25문제 /상표법 각 15문제) 민법개론	특허법/상표상표 : 조문위주 민법개론 : 전범위
2026년 7월 25~26일 (토,일)	산업재산권법(특허법 25문제 /상표법 각 15문제) 민법개론	특허법/상표상표 : 조문위주 민법개론 : 전범위
2026년 8월 29~30일 (토,일)	산업재산권법(특허법 25문제 /상표법 각 15문제) 민법개론	특허법/상표상표 : 전범위 민법개론 : 전범위
2026년 9월 26~27일 (토,일)		
2026년 10월 24~25일 (토,일)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전범위
2026년 11월 28~29일 (토,일)	자연과학개론	
2026년 12월 26~27일 (토,일)		
2027년 1월 23~24일 (토,일)		

*시행일정은 학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고, 보이고, 보완하는

THE PREMIUM 모의고사

실전처럼 보고, 약점은 보이고,
다음공부는 보완합니다.

변리사스쿨 모의고사만의 특별한 혜택

실전처럼 보는
모의고사

실제 시험
흐름에 맞춘 1차
모의고사 제공

점수로 보이는
현재 위치

과목별·문항별
취약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분석표 및
통계표 제공

잘 보면
더 받는 혜택

성적우수자 장
학금 및 강의할
인쿠폰 제공
*성적우수 인터뷰
촬영이 진행됩니다.

부담은 줄이고,
응시는 계속

우수 성적자에게
강의 수강시
활용 가능한
할인쿠폰 제공

체계적인
학습 피드백

응시 후 풀이 및
해설강의를 통해
학습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 모의고사 / 공지사항 및
변리사 수험커뮤니티(JHJ-GROUP)의
모의고사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6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다법개정]

6회차 복습

- 출원공고결정 - 손실보상청구권, 이의신청, 직권거절결정, 직권보정
- 등록결정 - 직권재심사
- 거절결정 - 재심사청구
- 손실보상청구권 - 서면경고 → 경고 후 상표권 등록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 → 등록 후 행사 可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유 보정 → 답변서제출기회 → 심사 → 결정
- 등록료 - 10년치(5년치 분할 可), ① 등록결정서 받은 날부터 2개월 ② 기간연장청구 ④ 보전기간 1개월 ③ 추후보완 2개월/1년, 반환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_____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_____의 등본이 _____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_____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에 대하여 _____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_____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_____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거절결정이 확정, 출원공고결정, 출원인, 분할, 거절결정, 취소의 심결, 이미 출원공고, 30일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¹⁾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는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_____한 상표를 _____하는 자에게 _____으로 _____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 _____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_____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_____상표권을 _____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_____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_____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_____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유사, 동일유사, 사용, 서면, 경고, 출원의 사본, 출원공고 전, 경고 후, 설정등록, 업무상 손실, 설정등록 전, 상표권의 행사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²⁾.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_____· _____ 또는 _____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된 경우

1) 특허법 제65조 보상금청구권

2) ex) 침해금지청구권(제107조), 손해액 추정(제110조), 법정손해배상(제111조), 고의 추정(제112조) 준용 x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_____로 한다는 _____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_____된 경우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이 확정, 무효, 심결, 확정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_____ 출원공고일부터 _____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_____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
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3. 이의신청의 대상
- 4. 이의신청사항
-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누구든지, 30일, 지식재산처장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_____이 지난 후 _____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30일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_____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

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심사관 3명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_____ .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_____ 할 수 있는 기회를 주_____ .

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 어야 한다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_____ 하거나 _____ 하여 심사·결정_____ .

병합, 분리, 할 수 있다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_____ 에 대해서는 _____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_____ 에게도 상표등록_____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른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인, 거절결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

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_____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_____나 _____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답변서 제출, 지정상품, 이유, 증거, 각하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_____ 거절이

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_____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_____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_____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_____에
게 상표등록_____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출원공고 후, 직권, 거절결정, 결정, 이의신청인, 거절결정

등록료)

제72조(상표등록료) ①³⁾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_____로 _____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⁴⁾ _____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⁵⁾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회, 분할, 이해관계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납부방법 등) ⑤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_____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_____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_____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3) 특허법 제79조
 4) 특허법 제80조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7항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설정 _____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_____ 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 _____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료): 최초 3년분, 3개월, 6개월 vs 상표: 등록료(10년분), 2개월, 분할, 등록일로부터 5년

⑧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 _____ 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_____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유지료): 등록일, 1년분씩 vs 상표는 유지료 개념 x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_____ 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명령, 1개월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⁶⁾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 _____(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_____에는 _____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등록료, 낼 때, 지정상품별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⁷⁾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_____에 의하여 _____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구, 30일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_____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원납부기간) 또는 제74조(연장신청)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6) 특허법 제215조의2

7) 특허법 제81조 : 추가납부기간 6개월 vs 상표법 제74조 : 연장신청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추가납부기간 없음

8) 특허법 제81조 제3항

-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보전기간 1月)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추후보완 2月, 1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⁹⁾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_____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_____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_____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보전, 1개월, 2배의 범위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¹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_____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_____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9) 특허법 제81조의2

10)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제4항(효력제한기간)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_____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_____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2개월, 1년, 납부기간, 회복

제78조(수수료)¹¹⁾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_____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_____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심사관, 면제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¹²⁾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_____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

11) 특허법 제82조, 제83조

12) 특허법 제84조

- 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_____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_____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_____ 또는 _____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청구, 2회차, 5년, 소멸, 포기, 납부한 자, 5년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7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다법개정]

7회차 복습

- 등록 - 상표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포·갱·전·추·처, 사용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포·처, 상표권의 질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소(혼동 제외)·처, 사용권의 질권 설·이(상속 등 제외)·변·포·처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 동의 - 이(상속 등 제외)·사·질 : 위·옆으로 동의, 포 : 밑으로 동의
- 상표권 소멸 - 개인 상속인 부존재, 개인 3년 이내 상속인 이전등록 x, 법인 청산
- 법정사용권 - 저촉관계 존속기간만료, 선사용권, 경매
- 질권 - 사용권 無, 물상대위 可(단 압류 要)
- 상표권 내용 - 사용권 제한 有(전용사용권 설정, 저촉관계), 배타권 제한 有(제90조, 효력제한기간 2개, 법정사용권 3개)

등록원부 등록)

제80조(상표원부)¹⁾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허법 제85조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²⁾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³⁾ ① 상표권은 _____에 의하여 _____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_____를 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발생, 등록공고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_____(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__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_____, 상품분류 _____, 지정상품의 _____ 또는 _____의 제한
2. _____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_____· _____(_____이나 _____)

2) 특허법 제86조
3) 특허법 제87조
4) 특허법 제101조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_____ · _____ (권리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_____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포기, 갱신, 전환, 추가, 처분, 상표권, 설정,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소멸, 혼동, 처분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⁵⁾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_____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_____ · _____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_____ · _____에 의한 소멸 또는 _____의 제한

2. _____ 또는 _____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_____ · _____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_____ · _____에 의한 소멸 또는 _____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항, 설정,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포기, 처분,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설정, 이전, 상속, 일반승계, 변경, 포기, 처분

내용)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⁶⁾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_____에 적은 _____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5) 특허법 제118조
6) 특허법 제97조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_____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_____에 따라 정해진다.

출원서, 상표, 출원서, 상품

제89조(상표권의 효력)7)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_____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_____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사용권자, 독점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8)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 _____에 출원된 타인의 _____· _____ 또는 그 상표등록 _____에 발생한 타인의 _____과 _____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과목에 따른 _____에 해당하는 경우9)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출원일 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출원일 전, 저작권, 저촉, 부정경쟁행위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10)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_____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지명한 아호·예명·필명

7) 특허법 제94조

8) 특허법 제98조

9)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0) 특허법 제96조

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_____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_____·_____·_____ 및 _____를 _____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성명, 명칭, 상거래 관행,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보통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_____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을 표시하는 것인지 _____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_____하는 상표와 _____ 및
 그 _____ 또는 _____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_____을 확보하는 데 _____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
 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 _____는 상표권의 설정 _____이 있는 후에 _____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체적 형상, 식별, 관용,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기능, 불가결한, 제1호, 등록, 부정경쟁

-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¹¹⁾**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냐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특허법 제105조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¹²⁾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¹³⁾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¹⁴⁾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_____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_____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

12) 특허법 제103조

13) 특허법 제122조

14)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다.

납부기간, 회복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¹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_____이 _____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_____¹⁶⁾ 전에 _____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_____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_____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_____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 확정, 등록, 선의, 무효, 취소, 권리범위

존속기간갱신)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¹⁷⁾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_____이 있는 날부터 _____으로 한다.

- ②¹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_____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법 제181조
 16) 특허법 제181조 제1항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160조의 “상표권의 등록”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17) 특허법 제88조 :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법 제22조 : 출원일 후 10년
 18)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설정등록, 10년, 10년씩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_____(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_____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4. 지정상품 및 상품류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_____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_____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상표권자, 각 공유자, 1년, 6개월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 _____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_____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_____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_____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갱신, 원등록, 다음 날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19)

를 준용한다.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_____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_____(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_____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상표권자, 각 공유자

동의)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_____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_____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_____을 _____하거나 그 _____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_____

19)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_____에 대하여 _____ 또는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지정상품, 유사, 동의, 지분, 양도, 지분, 질권, 동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_____별로 분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지정상품

제95조(전용사용권) ① _____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_____ 또는 _____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전용사용권자는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_____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을 설정하거나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상표권자, 성명, 명칭, 상속, 일반승계, 상표권자, 동의, 이전, 상표권자, 동의, 질권, 통상사용권

제97조(통상사용권) ① _____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_____이나 그 밖의 _____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_____ 및 _____를 말한다)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_____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_____(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_____ 및 _____를 말한다)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_____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상표권자, 상속, 일반승계, 상표권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동의, 이전, 상표권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동의, 질권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_____마다 포기할 수 있다.

지정상품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_____·_____ 또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_____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_____ 또는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_____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_____의 _____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_____할 수 없다.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 동의, 포기, 질권자, 통상사용권자, 동의, 포기, 질권자, 동의, 포기

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_____ 소멸된다.

그때부터

소멸)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_____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의 _____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_____된 때 _____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_____(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_____과 _____부터 _____이 지난 날 중 _____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_____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_____에 소멸된다.

3년, 이전등록, 3년, 다음 날, 개시, 상속인, 청산종결등기일, 사실상 끝난 날, 청산종결등기일, 6개월, 빠른 날, 이전등록, 다음 날

사용권)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지축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권)

제104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_____.

할 수 없다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_____하여야 한다.

압류

상품분류전환등록)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종전의 법(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

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 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209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20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214조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제211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지정상품추가등록)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20) ① _____ 또는 _____은 등록상표 또는 _____

20) 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변경출원(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재출원출원(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_____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_____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²¹⁾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

상표권자, 출원인, 등록상표권, 추가등록출원서, 지식재산처장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²²⁾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_____ 또는 _____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상표권의 _____
 - 나. 상표등록출원의 _____, _____ 또는 _____
 -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_____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_____를 통지하여야

적 표시 증명표장), 분할이전출원(상표, 업무표장)

- 21) 1호: 출원인 성명 및 주소
- 2호: 대리인 성명 및 주소
- (3호: 상표, 4호: 지정상품 및 상품류)
- 5호: 조약우선권 주장(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 6호: 그 밖에 총리령(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으로 정하는 사항
- 22) 출원 거절이유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_____ 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_____ 를 하여 취소된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 이
 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_____ 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
 적으로 적어야 한다.

일부, 그 지정상품, 상표권자, 출원인, 소멸, 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 거절이유, 거절결정, 직권 제심사, 2개월, 지정상품별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8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타법개정]

8회차 복습

- 배타권 침해 - 민사조치, 형사조치
- 심판절차 개괄

배타권 침해)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전용사용권)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민사조치)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¹⁾ ① _____ 또는 _____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_____ 또는 _____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_____의 _____, 침해행위에 제공된 _____의 _____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²⁾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_____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_____,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_____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_____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금지, 예방, 물건, 폐기, 설비, 제거, 신청, 금지, 압류, 담보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³⁾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_____ 또는 _____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과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_____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_____을 상표

1) 특허법 제126조
 2)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
 3) 특허법 제128조 제1항

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_____.

1. 그 상품의 _____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양도, 합계액, 할 수 있다, 양도수량, 침해행위 외, 생산, 판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이익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_____ 수량 또는 그 _____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_____의 설정, _____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_____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_____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_____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넘는, 침해행위 외,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 해당 수량, 합리적

② 삭제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_____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_____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_____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
_____.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_____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_____ 또는 _____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_____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_의 취지와 _____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익액, 추정, 합리적, 할 수 있다, 초과액, 고의, 중대한 과실, 고려, 변론전체, 증거조사

⑦ 법원은 _____적으로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_____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_____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_____⁵⁾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고의, 동일유사, 동일유사, 5배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⁶⁾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4)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특허법 제128조 제8항 : 5배

6)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

_____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_____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_____나 _____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_____(_____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_____의 취지와 _____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_____을 _____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동일성, 동일성, 고의, 과실, 1억원, 고의, 3억원, 변론전체, 증거조사, 변론, 종결

제112조(고의의 추정)⁷⁾ 제222조에 따라 _____임을 _____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_____한다.

등록상표, 표시, 추정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_____에 의하여 _____을 _____하거나 _____과 _____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_____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구, 손해배상, 갈음, 손해배상, 함께, 신용회복

제114조(서류의 제출)⁸⁾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_____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_____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_____의 _____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_____가

7) 특허법 제130조 : 과실추정

8) 특허법 제132조 : 자료제출명령, 특허법 제128조의2 : 감정사항 설명의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 손해, 서류, 제출, 정당한 이유

형사조치)

제230조(침해죄)⁹⁾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1억원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_____ 또는 _____ (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_____ 또는 _____ 는 _____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_____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_____ 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표, 포장, 상품, 제작 용구, 재료, 몰수, 쉽게 분리, 상품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_____, _____ 또는 _____ 이 _____ 에 대하여 _____ 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_____ 에 _____ 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_____ 하거나 _____ 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특허심판원, 거짓, 5년, 5천만원, 확정 전, 자수, 감경, 면제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¹⁰⁾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특허법 : 침비위허거비 / 상표법 : 침 위허거비 (상표는 비밀누설죄 없음)

10) 특허법에서는 허위표시죄라 명칭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_____ 또는 _____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포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포찰을 포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록상표, 등록출원상표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5조제3항(전용사용권), 제97조제2항(통상사용권), 제104조(질권), 제110조제4항(손해액의 추정 등),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취소)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및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_____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_____나 _____의 _____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색채, 색채, 색채, 조합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_____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_____등록, _____의 _____등록, _____등록, _____등록 또는 _____을 받은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상표, 지정상품, 추가, 존속기간갱신, 상품분류 전환, 심결, 3년, 3천만원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_____에서 _____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_____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내외, 정당한 사유, 5년, 5천만원, 고소

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사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 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¹¹⁾, 제233조¹²⁾ 또는 제234조¹³⁾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_____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_____에게는 _____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_____와 _____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_____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_____ 이하의 벌금

법인, 개인, 해당 조문, 상당한 주의, 감독, 3억원, 6천만원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_____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당사자신문)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당사자)으로서 _____에 대하여 _____ 진술을 한 사람

11) 침해죄

12) 거짓표시죄(허위표시죄)

13) 거짓행위죄

2. _____ 으로부터 _____ 또는 _____ 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_____ 또는 _____ 명령을 받은 자로서 _____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_____ 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_____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_____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 이 부과·징수한다.

50만원, 특허심판원, 거짓, 특허심판원, 증거조사, 증거보전, 제출, 제시, 정당한 이유, 특허심판원, 정당한 이유, 거부, 지식재산처장

심판)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¹⁴⁾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 _____.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_____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_____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_____

4. 제121조에 따른 _____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_____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_____ 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_____ 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_____ 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있다, 무효심판, 취소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모두, 모두, 모두

14) 특허법 제139조

- 제124조의2(국선대리인)**¹⁵⁾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_____이 명백하거나 _____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_____할 수 있다.
-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청, 이유 없음, 권리의 남용, 감면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¹⁶⁾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_____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_____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의 표시
4. _____ 및 그 _____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_____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_____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_____를 보정하는 경우
3. _____ 또는 _____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_____에
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

15) 특허법 제139조의2

16) 특허법 제140조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_____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_____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 청구의 취지, 이유, 요지, 상표권자, 청구의 이유,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권리범위 확인심판, 피청구인, 함께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¹⁷⁾ ① 제115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_____ 및 _____
4. _____ 및 그 _____
5. 심사관의 _____ 또는 _____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_____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_____에게 알려야 한다.

17) 특허법 제140조의2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출원일, 출원번호, 지정상품, 상품류, 거절결정일, 보정각하결정일,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¹⁸⁾ ① __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_____하고 _____한 경우에는 _____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26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5조제2항 또는 제1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_____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_____으로 _____하여야 한다.

심판장, 경미, 명확, 직권, 서, 결정, 각하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_____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_____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_____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_____부터 없었던

18) 특허법 제141조

것으로 본다.

청구인, 7일, 의견서, 심판장, 처음, 명백히 잘못, 처음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¹⁹⁾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_____에게 _____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 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제129조(심판관)²⁰⁾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0조(심판관의 지정)²¹⁾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_____에 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심판관

제131조(심판장)²²⁾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_____를 _____한다.

사무, 총괄

제132조(심판의 합의체)²³⁾ ① 심판은 _____ 또는 _____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19) 특허법 제142조
 20) 특허법 제143조
 21) 특허법 제144조
 22) 특허법 제145조
 23) 특허법 제146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명, 5명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24) ① _____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분을 _____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심판장, 피청구인, 답변서

제134조(심판관의 제척)25)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_____ 또는 그 _____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 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_____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_____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_____, _____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_____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_____결정이나 _____에 대한 결정 또는 _____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_____를 가진 경우

심판관,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대리인, 상표등록여부, 이의신청, 심결, 이해관계

제135조(제척신청)26) 제134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_____을 할

24) 특허법 제147조

25) 특허법 제148조

26) 특허법 제149조

수 있다.

제척신청

제136조(심판관의 기피)27) ① 심판관에게 _____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_____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_____ 또는 _____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_____. 다만, _____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_____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 기피신청, 서면, 말, 할 수 없다, 기피의 원인, 그 후에 발생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28)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_____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말, 3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29)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_____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_____할 수 없다. 다만, _____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 _____.

심판, 관여, 의견, 할 수 없다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30)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27) 특허법 제150조

28) 특허법 제151조

29) 특허법 제152조

30) 특허법 제153조

_____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__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지, 긴급

제140조(심판관의 회피)³¹⁾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_____ 할 수 있다.

회피

제141조(심리 등)³²⁾ ① 심판은 _____ 심리 또는 _____ 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_____ 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_____ 또는 _____ 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31) 특허법 제153조의2

32) 특허법 제154조

구술, 서면, 신청,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³³⁾ ① _____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_____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_____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심판장, 의견서, 의견진술

제142조(참가)³⁴⁾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_____가 _____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당사자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_____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_____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보조참가인)은 모든 _____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_____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리, 종결, 취하, 이해관계, 심판절차, 피참가인

33) 특허법 제154조의3, 상표법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특허법 제154조의2) 없음

34) 특허법 제155조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³⁵⁾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_____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_____.

심판장, 의견서, 심판, 할 수 없다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³⁶⁾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_____에 의하여 또는 _____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_____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_____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_____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청, 직권,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의견서

제145조(심판의 진행)³⁷⁾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_____를 밝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_____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 _____.

35) 특허법 제156조

36) 특허법 제157조

37) 특허법 제158조

절차, 출석, 할 수 있다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³⁸⁾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직권심리)³⁹⁾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_____에 대해서도 심리 _____ .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_____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_____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이유, 할 수 있다, 의견, 청구의 취지

제147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⁴⁰⁾ 심판관합의체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 _____.

할 수 있다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⁴¹⁾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_____ 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 제1항에 따른 _____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_____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⁴²⁾이나 제117조제1항(상표등록 무효), 제11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 또는 제214조제1항(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에 따른 _____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_____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_____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8) 특허법 제158조의2

39) 특허법 제159조

40) 특허법 제160조, 특허법에는 심판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심판관과 심판관합의체는 구분할 필요 없음

41) 특허법 제161조

42) 특허법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항별 취하 不可, 특허법에서는 특취, 특무, 권확만 청구항별 취하 可

확정, 답변서, 동의, 거절결정, 무효, 지정상품, 처음

제149조(심결)43)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_____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_____에 의하여 또는 _____으로 심리를 _____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_____, _____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_____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리의 종결, 신청, 직권, 재개, 당사자, 참가인, 거부

제150조(일사부재리)44) 이 법에 따른 심판의 _____이 _____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

43) 특허법 제162조

44) 특허법 제163조

에 대해서는 _____ 같은 _____ 및 같은 _____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_____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결, 확정, 누구든지, 사실, 증거, 각하심결

제151조(소송과의 관계)45)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_____ 또는 당사자의 _____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
_____.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_____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_____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 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_____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_____, _____ 또는 청구의 _____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권, 신청,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 끝난, 법원, 각하결정, 심결, 취하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46) ① _____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_____하고 _____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_____.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5) 특허법 제164조

46) 특허법 제164조의2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_____ 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_____ 된 것으로 본다.

심판장, 동의, 중지, 결정, 할 수 있다, 취소, 취하

제152조(심판비용)47)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_____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_____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_____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또는 제116조(거절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심판비용은 _____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_____된 후 당사자의 _____에 의하여 _____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심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다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부담, 심결, 결정, 청구인, 확정, 청구, 특허심판원장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48)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_____ 소

47) 특허법 제165조

48) 특허법 제166조

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특허심판원

재심)

제157조(재심의 청구)⁴⁹⁾ ① 당사자는 _____ 된 _____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⁵⁰⁾을 준용한다.

확정, 심결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⁵¹⁾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_____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_____를 _____으로 한다.

손해, 당사자, 공동피청구인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⁵²⁾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_____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_____ 또는 _____이 심결 등본의 _____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_____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 사유가 심결 _____ 후에 생겼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_____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_____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49) 특허법 제178조
50) 특허법 제185조
51) 특허법 제179조
52) 특허법 제180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일, 청구인, 법정대리인, 송달, 다음 날, 3년, 확정, 다음 날, 저촉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⁵³⁾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_____이 _____된 후 그 회복된 _____의 _____전에 _____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 확정, 상표권, 등록, 선의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⁵⁴⁾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결취소소송)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⁵⁵⁾ ① _____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_____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_____, _____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_____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53) 특허법 제181조, 특허법에는 법정실시권이 추가로 있음(특허법 제182조, 제183조)

54) 특허법 제184조

55) 특허법 제186조

-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_____은 도서·벽지 등 _____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_____을 정할 수 있다.
-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_____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심판전 치주의).
-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_____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_____에 _____할 수 있다.

심결, 각하결정, 당사자, 참가인, 거부, 30일, 심판장, 교통, 부가기간, 심결, 심판비용, 대법원, 상고

제163조(피고적격)⁵⁶⁾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_____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상표등록 무효심판), 제11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제119조제1항·제2항(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20조제1항(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제121조(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제214조제1항(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_____에 대한 소는 그 _____ 또는 _____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심결, 청구인, 피청구인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보 송부)⁵⁷⁾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_____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_____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_____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지식재산처장이 피고가 아닌 경우)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_____정본을 _____에

56) 특허법 제187조

57) 특허법 제188조

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 제기, 상고, 특허심판원장, 재판서, 특허심판원장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⁵⁸⁾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_____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_____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_____되었을 경우에는 _____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_____한다.

판결, 취소, 확정, 다시 심리, 기속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⁵⁹⁾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58) 특허법 제189조

59) 특허법 제191조의2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9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다법개정]

9회차 복습

- 절차 - 당사자계 절차개괄: 심판청구 → 담당심판부 지정 → 방식 → 답변서제출기회 → 심리(당사자, 직권) / side 절차 → 심리종결 → 심결 → 특허법원 불복 / 확정 후 재심
- 결정계 절차개괄: 답변서제출기회 x, 참가신청 x
- 당사자계 심판 - 상표취소심판, 사용권취소심판, 상표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정계 심판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불복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_____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_____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_____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_____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_____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

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기간, 등록여부결정, 출원공고결정, 확정, 중지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_____등록거절결정, _____등록 거절결정 또는 _____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_____(지정상품마다)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지정상품추가, 상품분류전환, 3개월, 일부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_____은 당사자의 _____에 의하여 또는 _____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_____이내에서 _____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_____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지식재산처장, 청구, 직권, 30일, 한 차례, 교통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____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_____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2개월, 1년,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 보정), 제42조(보정각하), 제45조(분할출원),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7조부터 제68조(출원공고, 손실보상청구권, 직권보정, 이의신청, 등록결정)까지, 제87조제2항·제3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 및 제210조제2항·제3항(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출원공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제5항,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87조제2항·제3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 및 제210조제2항·제3항(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 _____의 이유와 _____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거절결정, 다른 거절이유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제2항(답변서제출기회), 제142조 및 제143조(참가신청)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_____로써 _____ 또는 _____을 _____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_____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_____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_____한다.

심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취소, 심사, 취소의 기본, 기속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 제156조에 따라 _____ 또는 _____이 _____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_____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_____(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취소, 보정, 심판청구료

무효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_____등록 또는 _____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제27조(외국인 권리능력), 제33조부터 제35조(식별력 7개, 21개+③, 선원주의)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출원 승계 등), 제54조제1호(성립성)·제2호(조약反) 및 제4호부터 제7호(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등록 받을 수 있는 자, 정관·규약 관련)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제54조 거절이유 중 제38조제1항 1상표 1출원 제외)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_____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원 상표권 소멸, 원 출원 무효·취하·포기·거절확정)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_____된 후 그 상표권자가 _____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_____에 위반된 경우

6. _____ 된 후 그 등록상표가 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____ 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_____ 되거나 _____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해관계인, 심사관, 상표, 지정상품의 추가, 지정상품, 승계, 상표등록, 제27조, 조약, 상표등록, 제33조제1항, 등록, 보호가 중단, 사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_____ 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후발적 무효사유)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_____ 에 _____ 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_____ 에 _____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_____ 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_____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멸된 후, 처음부터, 같은 호, 해당, 등록원부, 공시, 전용사용권자, 등록된 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 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_____ 마다 청구할 수 있다.

-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위반된 경우
- 2. 해당 _____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_____ 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심사관, 지정상품, 상표권자, 공유자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_____ 또는 _____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해관계인, 심사관, 지정상품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¹⁾, 제35조(선원주의), 제118조제1항제1호(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난 후 6개월 이내 신청) 및 제214조제1항제3호(존속기간 만료 전 1년+존속기간 끝

1) 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포함
 7호, 8호: 선출원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와 동일·유사
 9호, 10호: 주지상표(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
 16호: 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포함

난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_____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년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_____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_____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_____마다 심판청구를 _____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거절결정, 무효심판, 지정상품, 취하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_____가 _____로 _____에 등록상표와 _____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_____에 _____ 또는 이와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_____을 불리일으키게 한 경우

상표권자, 고의, 지정상품, 유사한 상표, 유사한 상품,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2. _____ 또는 _____가 _____ 또는 이와 _____에 _____ 또는 이와 _____를 사용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_____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_____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대신 제120조 취소심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지정상품, 유사한 상품,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상표권자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_____없이 _____를 그 _____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_____이상 _____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 등록상표, 지정상품, 3년, 국내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상표권 승계 등)에 위반된 경우

5. 상표권의 이전으로 _____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_____한 _____에 _____을 목적으로 자기의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_____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유사한 등록상표, 동일유사, 상품, 부정경쟁, 등록상표, 품질, 오인, 타인, 혼동

5의2.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_____한 _____에 _____을 목적으로 자기의 _____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_____을 _____하게 하거나 _____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_____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²⁾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성과 만든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_____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2)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_____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_____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_____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_____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_____ 및 _____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_____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_____ 및 _____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_____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_____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불사용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_____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_____하여야 한다.

일부 지정상품, 피청구인, 하나 이상, 정당한 이유, 제4호, 제6호, 누구든지, 제4호, 제6호, 이해관계인, 그때부터, 심판청구일, 통지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_____ 또는 _____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품질오인·혼동)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와 그 밖에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 또는 해당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제122조(제척기간) ② 제119조제1항제1호(상표권자 품질오인·혼동)·제2호(사용권자 품질오인·혼동)·제5호(상표권

이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제5호의2(상표공존제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 제7호부터 제9호(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관련)까지 및 제120조제1항(사용권자 품질오인·혼동)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년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1호: 상표권자 품질오인·혼동
 2호: 사용권자 품질오인·혼동
 5호: 상표권 이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
 5호의2: 상표공존제도에 따른 유사 등록상표 품질오인·혼동
 3호: 불사용취소

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_____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_____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_____이 _____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_____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_____이 _____된 경우

청구일, 3년, 존속기간, 만료, 포기, 심결,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_____마다 청구할 수 있다.

지정상품

6호: 상표권 승계 등
7호 내지 9호: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관련



조현중 상표법 쪽지시험 10회차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다법개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¹⁾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②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²⁾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자기의 상품에 직접 사용 可 vs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자기의 상품에 사용 不可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만 사용 可)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법인만 등록 可 vs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법인 or 개인 등록 可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³⁾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시행령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상표법 시행령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상표법 시행령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3.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지리적표시 정의와 일치함 증명서류)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료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5조의 사항(지리적표시 정의와 일치함 증명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FTA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⁴⁾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⁵⁾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

4)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각 법에 따라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 FTA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특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

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

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 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하는 행위

타적 사용을 보장하고,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주지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제44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⁶⁾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⁷⁾ 내에 지식재

6)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지리적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 不可
 7)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표장)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출원의 변경)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8) 업무표장등록출원은 비영리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 등 영리와 관련된 다른 출원으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5조(전용사용권)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9)·제4항을

9) 업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질권 설정 不可

준용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¹⁰⁾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¹¹⁾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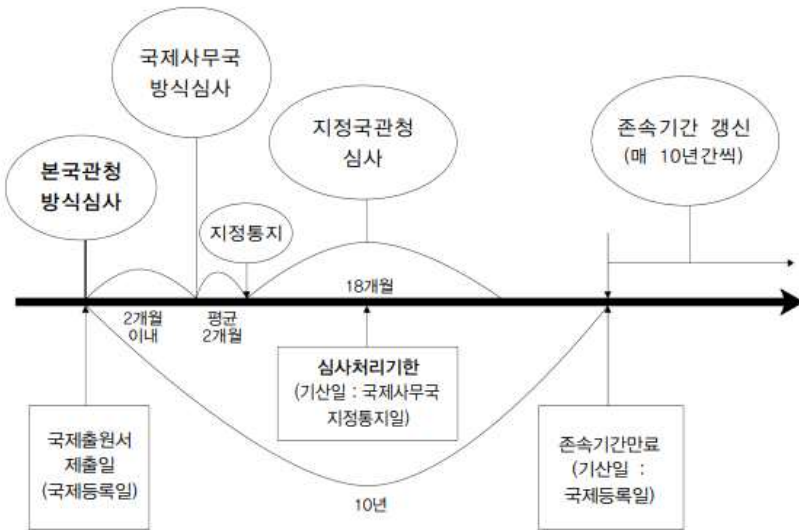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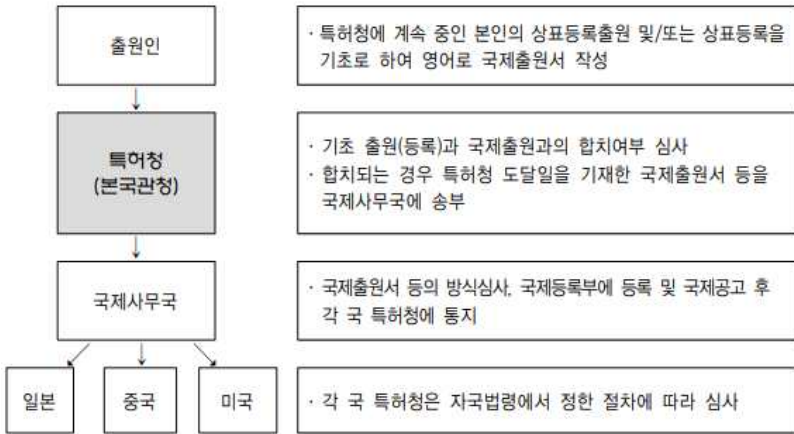
10) 업무표장등록출원 이전 제한 규정 위반시 거절이유, 무효사유 vs 업무표장권 이전 제한 규정 위반시 취소사유

11) 업무표장은 국제조약이나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특유 제도이므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은 업무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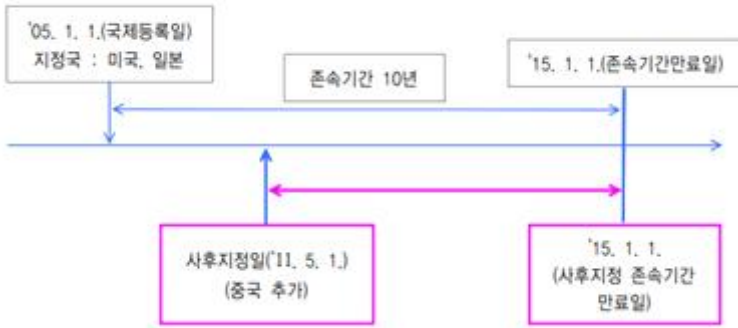
- i) 업무표장등록출원은 비영리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법 제44조제1항에 의한 출원의 변경(상표로)이 허용되지 않는다.
 - ii) 업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권은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다(법§48⑥1, §법93④).
 - iii) 업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법§95②, 법§97⑤).
 - iv)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법§93⑧).
- * 업무표장등록출원이 이전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거절이유 및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법§54-3, 법§117①1), 업무표장권의 이전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법§119①4)

국제출원 part 112)



- 12)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국 한국 포함 국제출원
 국제등록: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
 본국관청: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지식재산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송부하는 업무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각종 하자통지에 대한 대응 업무 담당. 특히 국제출원이 기초출원(등록)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 기초출원(등록)의 소멸이 있는 경우 그 소멸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업무도 담당.
 지정국관청: 지정국 지식재산처

(지정국가 추가사례)



제167조(국제출원)13)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14)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13) 기초출원·등록: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

14) 특허법 제192조·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내국인, 재내자, 내국인·재내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자, 내국인·재내자와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¹⁵⁾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총리령¹⁶⁾으로 정하는 사항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¹⁷⁾.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15) 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 영어 vs 특허법 제193조·특허법 시행규칙 91조: 국어, 영어, 일본어

16) 상표법 시행규칙 제77조

17) 특허법 제28조 제2항 단서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72조(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 (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¹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¹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²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18)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19)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

20)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²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7조(절차의 무효) 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

특례 part 4)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²²⁾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²³⁾·제3항²⁴⁾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

22) 특허법 제199조

23)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정관 요약서

24) 정관

는 자는 같은 조 제1항²⁵⁾·제4항²⁶⁾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²⁷⁾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²⁸⁾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²⁹⁾³⁰⁾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 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삭제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³¹⁾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5)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정관 or 규약 요약서

26) 정관 or 규약, 증명할 수 있음 증명서류

27)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or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3개월

28) 상표법 시행령 제17조-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 증명서류

29)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의 국내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30) 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존속 기간 만료,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등으로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 일부가 소멸된 경우(취소사유 중 제4호 제외),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이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31) 영역확장 효력일 = 국제등록일 or 사후지정일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 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³²⁾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 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 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³³⁾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2) 마드리드의정서 제4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 (1) 계약당사자의 관청에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대상인 표장이 국제등록의 대상이기도 하고 양 등록이 동일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지역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 (i)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제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상기 계약당사자에게 확장되어야 하고,
 - (ii)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전부가 상기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에서도 열거되어 있어야 하며,
 - (iii) 그러한 확장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서 언급된 관청은 신청이 있을 때 국제등록에 관한 그 관청의 등록원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33)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³⁴⁾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³⁵⁾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재심사 청구기간), 같은 조 제2항제4호(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재심사 청구기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³⁶⁾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³⁷⁾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³⁸⁾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³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34)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1회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된 적이 없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최소한 1회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 한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35) 국제출원제도는 지정국(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표장을 보정할 수 없다.

36)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요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7)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이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요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38) 출원인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39)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⁴⁰⁾ 및 제5항⁴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출원시 특례)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⁴²⁾ 내에”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우선심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거절이유통지)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2월 내 절차계속신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⁴³⁾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⁴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40)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42) 상표법 시행규칙 제90조,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3개월

43)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14개월

44)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등록결정)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⁴⁵⁾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출원공고결정할 때 직권보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등록결정 후 직권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⁴⁶⁾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⁴⁷⁾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5)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18개월

46)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제196조(상표원부예의 등록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상표원부)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상표권 설정등록)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는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⁴⁸⁾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47) 제72조(상표등록료),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48)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⁴⁹⁾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및 제88조제2항(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준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삭제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⁵⁰⁾(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⁵¹⁾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49)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효력), 제8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관한 준용),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50) 이변포갱전추처: 등록: 효력발생요건

51)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⁵²⁾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⁵³⁾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또는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⁵⁴⁾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재출원).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52)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53)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54) Central attack

국제등록은 본국관청의 기초등록(기초출원)이 각 지정국으로 그 보호의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등록의 효력은 기초등록(기초출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이라 하고 종속기간은 5년이다. 즉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에서 기초등록(기초출원)이 실효되면 국제등록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지정국에서 당해 국제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호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본국관청의 기초등록이나 기초출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거절 또는 무효시킴으로써 모든 지정국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를 Central attack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

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제207조(심사의 특례)⁵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거절결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7조(출원공고결정) 및 제60조부터 제67조(이의신청, 출원공고 후 직권 거절결정)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조약 위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55) case 1) 국제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이미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었던 것이므로 재출원에 대한 요건심사만 실시하고 실체심사나 출원공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등록결정을 한다.
case 2) 국제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통상의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하되 재출원에 대한 출원일만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재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공고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재출원되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시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